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6일, 김도읍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도읍 의원)

최근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 같은 마약·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

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치와 재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을 뿐 예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마약·약물 중독자에 대해 1년 이내에 치료만 하고 있고 예방 사업으로는 교육 및 상담에만 그치고 있어 중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 중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안 제51조의3 신설, 안 제41조의4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 개정안에서 마약류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례 관리계획을 신설하려는 것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 그런데 개정안의 “관리계획”은 식약처 소관의 마약류 예방사업과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사례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므로, 현행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과 중복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약류 관련 업무는 다부처 소관 사항으로서 식약처, 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국무총리 산하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체계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통합적인 업무 수행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개정안의 관리계획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사례관리”는 복지부 소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과 식약처 소관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사업이 모두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마약류 중독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적인 질환의 일종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식약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보호·교육·상담 및 홍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됨.
- 다만, 개정안은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현행법 제51조의2에 따른 “사회재활사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